



長錦商船株式會社

Sinokor Merchant Marine Co., Ltd.

TEL : (02) 6496-7769 / FAX : (02) 6496-7777



<http://www.sinokor.co.kr>

수신: 화주 제위

발신: 장금상선 주식회사

제목: 항만안전관리비 부과 안내

1. 장금상선을 이용해 주시는 화주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해양수산부에서 [항만운송사업법] 제10조 1항 2022년도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를 신설함에 따라, 당사는 해당 지침에 의거 2022년 8월 1일부로 하기와 같이 해당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화주분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.

=     아     래     =

- 1) 청구 항목: 항만안전관리비 (Port Safety management Fee)
- 2) 적용 대상: 한국 발/착 모든 컨테이너 화물
- 3) 적용 일시: 2022년 8월 1일 부
- 4) 적용 요율: 237 원/TEU

3. 감사합니다.

Sinokor Merchant Marine Co., Ltd.

